

# 학교법인 레마학원

##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 시 : 2023년 12월 21일(목) 17:00 ~ 17:30  
 [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12월 11일(월)]

2. 장 소 : 화상회의(증빙자료 별첨)

###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6인) : 윤원영(이사장), 노만균, 송민, 이미순, 이영희, 조장환 이사
- 감사(2인) : 김명원, 조영임 감사

○ 불참 임원

- 이사(2인) : 박종환, 임성빈 이사

※ 배석자 : 방진희 법인사무국장,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

### 4. 안 건(심의)

- 가. 제1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 나. 제2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
- 다. 제3호 : 임원(이사) 선임(안)
- 라. 제4호 : 임원(감사) 선임(안)
- 마. 제5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신규채용(안)
- 바. 제6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재임용(안)  
 [승진 및 재임용 포함]
- 사. 제7호 :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간서명	노만균 <i>노만균</i>	이영희 <i>이영희</i>	조장환 <i>조장환</i>
-----	----------------	----------------	----------------

## 5. 회의 내용

### □ 개회 선언, 기도 및 전차 회의록 접수

- 이사장(의장) : 재적이사 8인 중 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기도한 후, 법인사무국장의 2023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대하여는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안건 심의는 제1호 안건부터 제7호 안건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되, 일부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두 건씩 일괄 상정하겠다고 알리다.

### □ 안건 심의

####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 이사장(의장) :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국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안건에 대하여,
  - (1) 변경 사유
    - 학교의 교육·연구·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관련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 변경 내용
    -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의 수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75조의2)
  - (3) 신규 조문 대비표(별도 붙임 자료)
    - ~ 등을 회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다.(관련 법령 등 포함)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송민 이사 :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을 수탁받아 학교의 전공과 연계 운영하여 학생의 연구, 실습, 실기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영희 이사 : 송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이영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노만균	노만균	이영희	이영희	조장환	조장환
-----	-----	-----	-----	-----	-----	-----

**(제2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

- 이사장(의장) : 제2호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국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하여,
  - (1) 제정 사유
    - 정관 제78조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칙을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 제정 내용
    - 시행세칙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함(제1조 ~ 제2조)
    - 정관 제27조제2항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함(제3조)
    - 법령과 정관 및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정함(제4조)
    - 법인사무국의 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각 기관의 직제와 정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상근임원의 위촉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법인 및 각 기관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법인사무국 직원에 대한 규정 적용기준을 정함(제9조)
    - 법인사무국의 업무를 정함(제10조)
    -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각 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 재산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 (3) 정관 시행세칙 전문
    - ~ 등을 회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조장환 이사 :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미순 이사 : 조장환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이미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2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노만균	노만균	이영희	이영희	조장환	조장환
-----	-----	-----	-----	-----	-----	-----

(제3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안)

(제4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감사) 선임(안)

○ 이사장(의장) : 제3호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안)” 과 제4호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감사) 선임(안)” 심의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이사 선임(안) 및 감사 선임(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안) >

(1) 제안 이유

- 학교법인 임원 중 이사 3인(개방이사 1인 포함)이 2024.02.01.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자 함
  - 임기만료예정 이사 현황(3인)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	노만균	2021.02.02. ~ 2024.02.01. (3년)	중임, <u>개방이사</u>
이사	박종환	2021.02.02. ~ 2024.02.01. (3년)	중임
이사	이미순	2021.02.02. ~ 2024.02.01. (3년)	중임, <u>교육이사</u>

(2) 개방이사 선임

-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이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1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후보자 2배수를 추천함

\* 2023학년도 제1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2023.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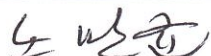


-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현황(2인)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현직)	비고
중임	노만균	1947.07.29.	(주)엘스텍 대표이사	
신임	김순옥	1960.05.01.	(재)레마성서연구원 직원	

(3) 관련 법령 및 정관 내용

○ 사립학교법(제14조 및 제21조)

-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간서명	노만균		이영희		조장환	
-----	-----	---	-----	--	-----	---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음
      -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
      -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
      -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학교법인 정관(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 임원 선임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
    - 개방이사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개방이사 정수는 이사정수의 4분의 1
    -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 (4) 이사 선임시 고려사항
- 개방이사 : 이사정수의 4분의 1(8인 중 2인)
    - 임기만료예정 3인 외에 재적 개방이사가 1인이므로, 후임 개방이사 1인 선임이 필요함(중임 가능)
  - 교육이사 :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8인 중 3인 이상)
    - 임기만료예정 3인 외에 재적 교육이사가 2인이므로, 후임 1인은 교육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중임 가능)
  - 일반이사 : 1인 선임(중임 가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감사) 선임(안) >

(1) 제안 이유

- 학교법인 임원 중 감사 2인(개방감사 1인 포함)이 2024.02.13.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감사를 선임하고자 함
  - 임기만료예정 감사 현황(2인)

구분	성명	임기	비고
감사	김명원	2022.02.14. ~ 2024.02.13. (2년)	
감사	조영임	2022.02.14. ~ 2024.02.13. (2년)	중임, <u>개방감사</u>

간서명	노만균	<u>노만균</u>	이영희	<u>이영희</u>	조장환	<u>조장환</u>
-----	-----	------------	-----	------------	-----	------------

(2) 개방감사 선임

-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개방이사추천 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개방감사를 선임하여야 함
- 이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1인의 개방감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후보자 1배수를 추천함
- \* 2023학년도 제1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2023.11.16.)
-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 현황(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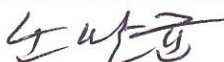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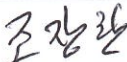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현직)	비고
신임	송연수 SONG LIANZHU	1970.07.14.	안산예일교회 담임목사	

(3) 관련 법령 및 정관 내용

- 사립학교법(제14조, 제20조, 제21조)
  - 학교법인은 임원으로서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함
  - 감사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음
  -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일 수 없음
  - 감사 중 1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 학교법인 정관(제21조)
  -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
  -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의 규정을 준용

(4) 감사 선임시 고려사항

- 개방감사 : 감사 2인 중 1인
  - 임기만료예정 2인 외에 재적 개방감사가 없으므로, 후임 1인은 개방감사로 선임하여야 함(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에 따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므로 현 개방감사 조영임은 더 이상 중임할 수 없음
- 일반감사 : 1인 선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 등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및 개방임원(이사 및 감사) 후보자 이력서 등 회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안건 설명에 대해 이사들의 질문이 없으므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다.
- 이사장(의장) : 먼저, 개방이사 1인 선임을 선언하고, 당사자인 노만균 이사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잠깐 화상회의에서 나가서 기다려 주기 바라며 곧 다시 회의

간서명	노만균		이영희		조장환	
-----	-----	---	-----	---	-----	---

에 초대하겠다고 하다. (노만균 이사 회의에서 나감)

○ 이영희 이사 : 김순옥 신임 후보자 역시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노만균이사가 기업대표의 경력과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력을 바탕으로 법인의 발전과 학교의 운영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어주실 것으로 판단되어 연임하여 계속 개방이사직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송민 이사 : 이영희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미순 이사 : 송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개방이사 선임 건은 현 개방이사이신 노만균 이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사장(의장) : 다음은 내년 2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일반이사 1인과 교육이사 1인의 후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당사자인 이미순 교육이사는 회의에서 잠깐 나가주고 노만균 이사는 다시 회의에 초대할 것을 지시하다.

(이미순 이사 회의에서 나가고, 노만균 이사 회의에 다시 들어옴)

○ 이사장(의장) : 이사들에게 일반이사와 교육이사 선임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조장환 이사 : 그동안 박종환 이사와 이미순 이사는 법인과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송민 이사 : 조장환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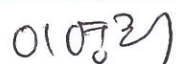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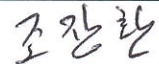
○ 이영희 이사 : 송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일반이사 및 교육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해당 이사 선임 건은 현 이사이신 박종환 이사와 교육이사이신 이미순 이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사장(의장) : 다음은 내년 2월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 2인의 후임 감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당사자인 김명원 감사는 회의에서 잠깐 나가주고 이미순 이사는 다시 회의에 초대할 것을 지시하다.

(김명원 감사 회의에서 나가고, 이미순 이사 회의에 다시 들어옴)

○ 이사장(의장) : 이사들에게 감사 선임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간서명	노만균		이영희		조장환	
-----	-----	---	-----	---	-----	---

- 이영희 이사 :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원 감사는 지난 임기 동안 성실히 감사 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임하여 한 번 더 수고해주실 것을 제안하고, 송연수 (SONG LIANZHU) 개방감사 후보자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직 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개방감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다.
- 노만균 이사 : 이영희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미순 이사 : 노만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감사 선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해당 감사 선임 건은 현 감사이신 김명원 감사가 연 임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조영임 개방감사 후임으로 송연수(SONG LIANZHU) 후보 자를 개방감사로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사장(의장) : 김명원 감사를 다시 회의에 초대할 것을 지시하다.  
(김명원 감사 회의에 다시 들어옴)
- 이사장(의장) : 그동안 수고해준 조영임 감사에게 임기 마지막까지 수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다.

**(제5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신규채용(안)**

**(제6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재임용(안) [승진 및 재임용 포함]**

- 이사장(의장) : 제5호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신규채용(안)” 과 제6호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재임용(안)” 심의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하고, 본 안건에 대해 대학원대학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처장 직무대행 : 2024.03.01.자 교원 신규채용(안) 및 재임용(안) 두 건의 안건 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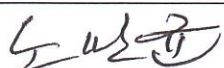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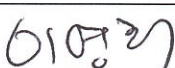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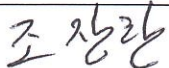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신규채용(안) >**

(1) 제안 이유

- 2024학년도 봄 학기부터 한국어교육학 전공을 설치·운영할 계획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증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청한 2024.03.01.자 교원 신 규채용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함

\* 2023학년도 제4차 대학원위원회(2023.11.07.)

- 한국어교육학 전공 설치·운영 계획(안) 심의·의결

간서명	노만균		이영희		조장환	
-----	-----	---	-----	---	-----	---



(2) 교원 신규채용 제청 내용(총 1명)

- 전 공 : 한국어교육학
- 성 명 : 안진숙(여, 1973.09.29.생)
- 임용직급 : 조교수(비정년트랙)
- 임용일자 : 2024.03.01.자
- 임용기간 : 2024.03.01. ~ 2026.02.28.(2년)

(3) 2023학년도 4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23.12.18)

- 교원 신규채용 후보자 안진숙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연구 실적물 등을 확인한 결과 조교수 채용 대상으로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동 평가를 승인하며 채용의 적격함을 확인하고 전체 위원 찬성으로 의결함
- 신규채용 대상자 종합평가 결과

지원분야	성 명	기초 및 전공심사(80)	면접심사(20)	계(100)
한국어 교육학	안진숙	73.3	18.5	91.8

<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재임용(안) [승진 및 재임용 포함] >

(1) 제안 이유

- 정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제청한 아래 교원의 2024.03. 01.자 재임용(안)[승진 및 재임용 포함]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확정하고자 함

(2) 교원 재임용 제청 내용(총 1명)

- 승진 및 재임용
  - 대상자 : 신학전공 부교수 유복곤(1961.07.24.생)
  - 임용직급 : 교수(비정년트랙)
  - 승진 및 재임용일자 : 2024.03.01.자
  - 임용기간 : 2024.03.01. ~ 2026.08.31.(정년퇴직)

(3) 2023학년도 4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23.12.18)

- 승진 및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 1명에 대한 교수업적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해 적격함을 확인하고 전체 위원 찬성으로 의결함
- 대상자 교수업적평가 결과(평균 B등급 이상 적격)

간서명	노만균	노만중	이영희	이영리	조장환	조장관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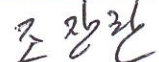
심사위원	교육(40)	연구(40)	봉사(20)	기타	계 (100)
A	39.68	35	18	-	92.68 (A)
B	38.69	36	19	-	93.69 (A)
C	제척	제척	제척	제척	-
합 계					186.37 평균 93.2 (A)

~ 등을 회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다.(관련 법령 등 포함)

- 이사장(의장) : 두 건의 안전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송민 이사 : 안진숙 신규채용 후보자는 한국어교육학 전공 설치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을 증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교수 임용 대상으로 제청하였고, 유복곤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업적평가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바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승진 및 재임용을 제청하였으므로 두 안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영희 이사 : 송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미순 이사 : 이영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교원 1명의 신규채용과 교원 1명의 승진 및 재임용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 5호 안전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신규채용(안)” 과 제6호 안전 “예명대학원대학교 2024.03.01.자 교원 재임용(안)[승진 및 재임용 포함]”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7호 안전)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 이사장(의장) :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을 상정하며, 오늘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을 할 이사로 노만균 이사, 이영희 이사와 조장환 이사를 지정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다.
- 노만균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영희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조장환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사장(의장) : 간서명할 이사 3인과 다른 참석이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노만균 이사, 이영희 이사와 조장환 이사가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간서명	노만균		이영희		조장환	
-----	-----	---	-----	---	-----	---

## 6. 폐회 선언

- 이사장(의장) : 더 이상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 2023학년도 제3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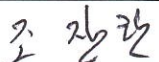
2023. 12. 21.

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장 윤원영 윤원영  
이사 노만균 노만균  
이사 송민 송민  
이사 이미순 이미순  
이사 이영희 이영희  
이사 조장환 조장환  
감사 김명원 김명원  
감사 조영임 조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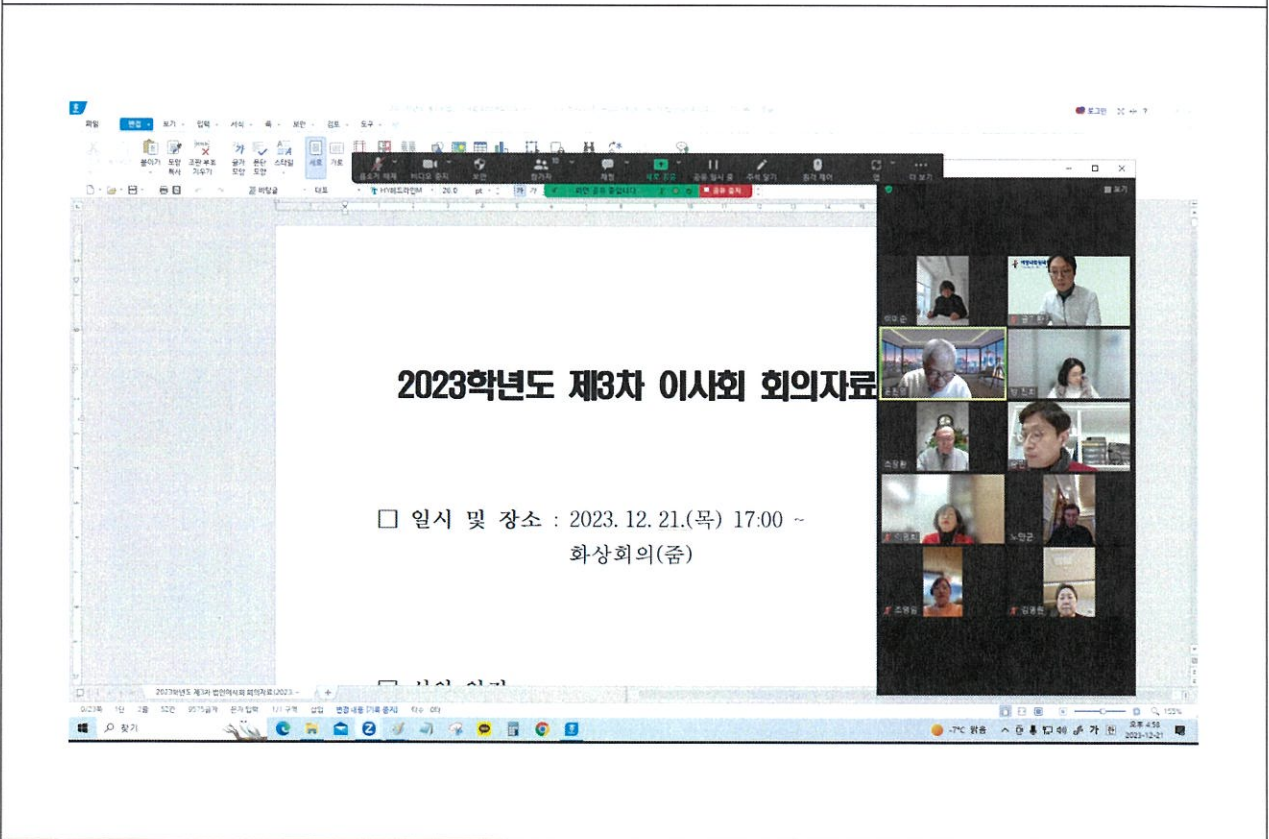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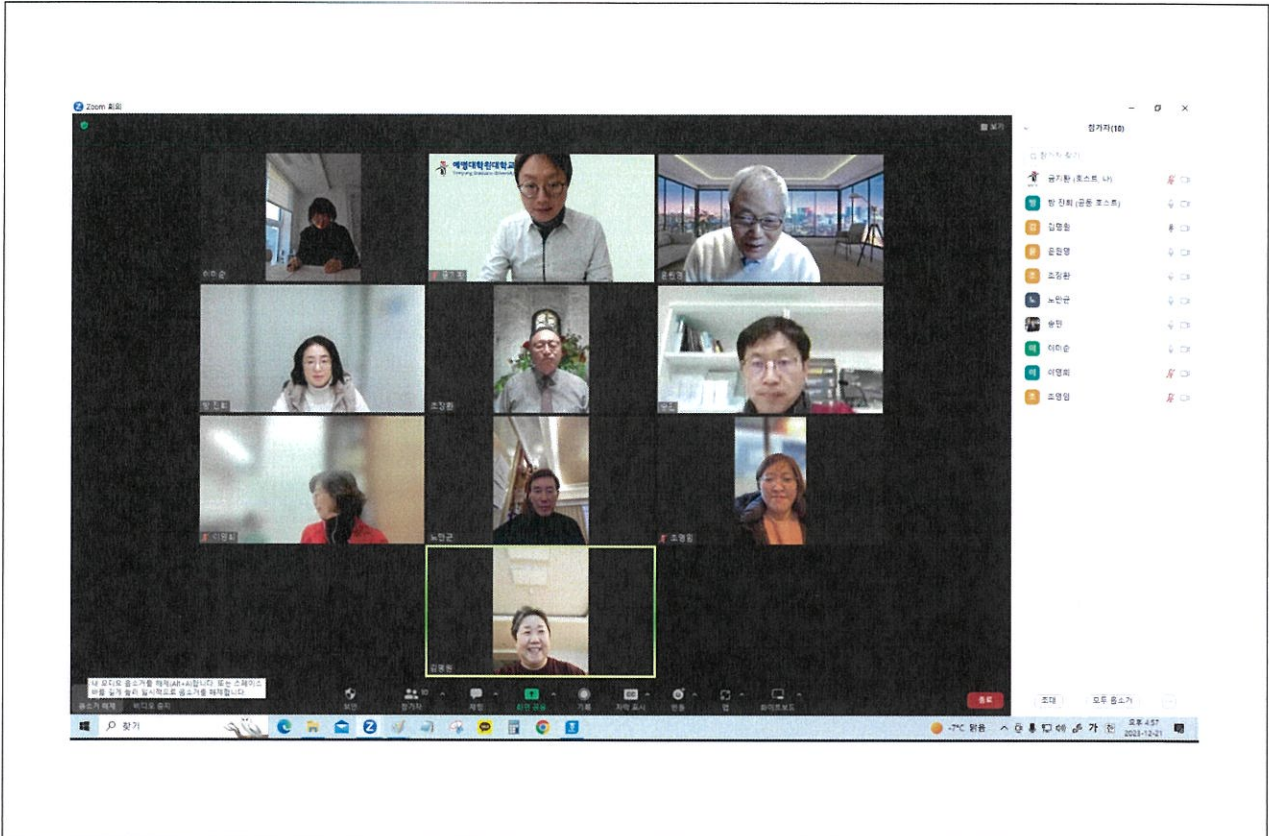
[붙임]

□ 정관 변경(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75조의2(부설연구기관 등)  <u>법인 또는 대학원대학교에 부설 연구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레마성서연구원, 어학교육원 및 예명상담센터를 둔다.</u></p>	<p>제75조의2(부설연구기관 등)  <u>① 법인 또는 대학원대학교에 부설연구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레마성서연구원, 어학교육원 및 예명상담센터를 둔다.</u>  <u>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연구·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u></p>	<p>항을 나누어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 등의 수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p>
	<p><b>부칙</b>  <u>(시행일 및 임원(이사)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u></p>	<p>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명확하게 함</p>

간서명	노만균 	이영희 	조장환 
-----	---	---	---

(화상회의 증빙자료)



간서명	노만균	<i>노만균</i>	이영희	<i>이영희</i>	조장환	<i>조장환</i>
-----	-----	------------	-----	------------	-----	------------